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11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임재상, 오상욱, 김소현

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남일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사이에 2020. 9. 29. 체결된 특허권 권리지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에 특허청 2020. 9. 29. 접수 C로 마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가정용 가구, 주방용품,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원고는 2020. 7. 22. B와 사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대출예정금액 550,000,000원,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20. 7. 22.부터 2021. 7. 2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20. 7.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특허권 지분이전 계약 체결

1) B는 2019. 9. 10.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B는 2019. 12. 2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0. 7. 14. 위 근질권의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2) B는 2020.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다.

3) B는 2020.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는 대신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잔존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기본거래계약 및 계약물품 공급이행을 위한 3차 부속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피고와 B는 피고와 B 사이의 2019. 5. 29.자 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 2020. 1. 15.자 '권리의무의 양도 및 기본거래 계약을 위한 부속속합의서'(이하 '1차 부속합의'라 한다), 2020. 6. 5.자 '양방향 회전 블렌더 공급을 위한 3자 합의서'(이하 '3자합의'라 한다), 2020. 6. 16.자 기본거래계약 및 계약물품 공급 이행을 위한 2차 부속 합의서(이하 '2차 부속합의'라 한다) 및 그에 부속한 모든 개별계약의 성실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대여금의 지급 및 정산]

피고는 B와 상생의 거래관계를 만들어 유지하고, 원활한 계약상품 공급을 위한 대여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대여금 지급 금액 :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지급일자 : 특허 양도, 양수 신청의 최종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3) 대여금의 변제 :

- 변제 방법 : 피고가 2020. 5. 28.자 지급한 2차 선급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상계처리가 완료된 시점 이후의 물품대 정산분에서 상계처리함

- 변제 기한 :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납품한 계약상품 2,000대 분의 물품대 지급 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 [담보 및 담보 권리의 양도]

B는 피고로부터 대여받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피고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B는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와 B가 공동 소유한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B의 잔여 권리를 피고에게 전체 양도한다.

제4조 [담보의 해제]

1. B는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 E 앞으로 근질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진행하고 해당 증빙을 피고에게 제출한다.

2. B는 본조 제1항의 이 사건 특허권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대여금 변제를 완료할 경우 기존 거래 계약과 상관없이 무조건 피고는 B가 변제를 완료한 시점부터 10 영업일 이내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와 B의 공동 소유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다.(중략)

3.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명시된 대여금의 변제 기한 내 대여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변제 기한이 초과한 시점에 대여금의 변제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양도된 제3조 제1항의 이 사건 특허권은 공동 소유권으로 재전환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2. 피고가 B에 2019. 6. 5.자 지급한 1차 선급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20. 5. 28.자 지급한 2차 선급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는 '2차 부속합의'에 정한 사항에 따라 정산한다.

3. B가 피고에 정산, 변제해야 하는 금액과 관련한 정산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1순위 : 2차 선급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대 일괄 상계처리

2) 2순위 : 대여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대 일괄 상계처리

3) 분할 정산 : 1차 선급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대 분할 상계처리

4)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잔존 지분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2020. 9. 29. 접수 C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5) 피고는 2020. 10. 5. B에 이 사건 대여금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2021. 7. 15.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자연체로 부실처리되어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21. 10.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449,497,6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보증부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보증금액 494,464,669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다음 날인 2021. 7. 22.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21. 10. 26.까지에 대한 위약금은 1,971,080원이다.

4)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차전19338호로 B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499,497,601원 및 위 위약금 채권 1,971,080원 합계 501,468,684원(이하 위 구상금 채권과 위약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2. 9.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22.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9. 29. 그 소유의 이 사건 특허권 잔존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특허권 잔존 지분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가 2020. 9. 2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특허권 잔존 지분에 관한 권리의 지분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2021. 7. 15.경 발생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로 원고가 2021. 10. 27. 그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0. 9. 29.보다 이후인 2021. 10. 27.경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0. 9. 29.보다 앞서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파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21. 7. 15.경에서야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약 3개월이 지난 2021. 10. 27.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을 취득한 점, ② B의 2019년, 2020년 당기순손익이 마이너스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B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 여러 보전 및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B는 2020. 4.경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이후 2020년 말까지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참조).

2) 판단 설령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20. 7.경부터 피고에게 양방향 회전 블렌더를 납품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온 점, ②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원고가 E에 대한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의 변제를 진행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B는 2020. 9. 24. E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질권을 말소하였는바,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매출은 2020. 4.부터 2020.말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한 거래량도 2020. 7. 거래량 326개에서 2021. 2. 거래량 4,345개로 증가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에게 꾸준히 위 블렌더를 공급하였고, 피고 외에 다른 기업과도 드라이기 등 물품공급거래를 해 온 점, ④ 피고와 B 사이에 위 물품공급거래 외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B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득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목

판사황지현

판사김은솔

별지